

or restrictions and there is no suspicion of fraud.

Miscellaneous provisions

11. Standard

Any information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used for Customs purposes only.

12. Standard

The documents needed for control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authorized bodies shall be retained by them for an adequate period which should not be less than two year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documentary evidence was issued.

13. Standard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accept this Chapter shall specify the authorities which are competent to receive requests for control and communicate their address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who will transmit such inform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having accepted this Chapter.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4월 27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대통령령 제19455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목외의 부분”을 “각 목 외의 부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 10.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다만, 신탁회사가 신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탁받은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탁회사는 공동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신탁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가.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른 나머지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로 하며, 동조에 제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

제5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6호·제7호에 의한 증권”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5·

제6호·제7호·제8호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8조중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상대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의 매매거래

제10조중 “각호”를 “각 호”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를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따른 신용사건(이하 이 조에서 “신용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신용사건 발생시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5호

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설정”을 “설정하거나 설립”으로, “영 제1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을 “영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관계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동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동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증권관계기관”등 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간접투자재산(「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의 매입 및 그 투자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정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간접투자기구”를 “간접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의 매입 및 그 투자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 ④제2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 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마목·바목·아목(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에 한한다)·자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사무실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도

록 차단장치를 갖추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간접투자기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승인을 얻어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증권관계기관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가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수탁회사업무 또는 자산보관회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 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회 사의 선정기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 에 단서 및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교 육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하나의 판매회사(가목 중 보험설계사의 경우에 는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와 체결한 자에게 간 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의 등 록요건을 갖춘 자연인으로서 위탁계약의 체결일 현재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과 관련된 광 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표시함으로써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2.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간접투 자기구가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3.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할 것

제58조제3항중 “판매금액 또는 판매회사별”을 “판매금액·판매회사· 투자기간 또는 납입횟수별”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대 여”를 “대여 또는 차입”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부동산 : 관리·개발 또는 임대
- 3. 선박 : 관리·개발 또는 대선(貸船)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의 규정을”을 “제1호 및 제4호를”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발행·창설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나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법 제137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중 “합병·해지”를 “합병 또는 해지·해산”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며, 동항제1호중 “합병·해지”를 “합병 또는 해지·해산”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산”이라 한다)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제16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2의2.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채권 또는 채무증서”를 “채권·채무증서 또는 어음”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를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채무증서 또는 어음”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제9호외”를 “제9호의2 외”로 한다.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9의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탁약관”을 “신탁약관 또는 정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투자증권”을 “투자증권 등 자산”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간접투자증권(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의 매매

6.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비율”을 “비율(제3자를 거치는 등 우회적인 방법

으로 관계증권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비율의 산정시에 합산한다)”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에의 예치(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주식을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간접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동산 :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제88조의 제목중 “공고”를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으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10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 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제131조제1항 전단중 “2배”를 “2배(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5배)”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 호의 지표”를 “각 호의 지표(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손익구조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간접 투자재산의 손익구조 변동”을 “손익구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일정한 보유기간”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으로 한다.

제131조의4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5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31조의6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44조의7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2.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

용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동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3.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제131조의6제7항중 “1년”을 “2년”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44조의7제7항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중 장래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자를 이행하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100분의 5의 비율 산정시 : 기금의 출자금으로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투자증권 매입액을 각각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7항에 따른 100분의 50의 비율 산정시 : 투자전문회사재산에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31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의9(금융과 관련되는 법령) ①법 제144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20호·제24호·제28호 또는 제29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객”을 “고객(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동 계약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를 “제1항에 따라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는 그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자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문회사”로 본다.

제146조제3항 진단중 “제132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을 “제132조제3항·제133조·제135조 및 제136조는”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중 “법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47조, 법 제152조”를 “법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47조, 법 제152조, 법 제166조”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역외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47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 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증권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투자증권·간접투

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 또는 기업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투자증권·간접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 또는 기업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 등) ①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판매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2.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사업설명서 및 영업보고서
3. 투자설명서
4. 제6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의 사본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외국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2. 외국간접투자기구의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종료· 만료되거나 해지· 해산하는 경우
3. 외국간접투자증권이 제15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59조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④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한 사유, 판매중지에 따른 간접투자자 보호조치 및 판매대행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등의 변경
2. 외국자산운용회사· 외국수탁회사 또는 외국자산보관회사 등의 변경

3.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외국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리인(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⑦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판매중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사항의 주요내용을 한글로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판매대행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 또는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보고, 그 밖에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을 제외한다) 또는 홍콩·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수수료 등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간접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환매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법인일 것”을 “법인인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30인”을 “30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간접투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동법에 따라 주식백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3 제6호·제9호·제27호 및 제3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의 제정보고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내역 보고의 접수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의 보고의 접수
10. 법 제41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1. 법 제16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82조제1항제1호, 제107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0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중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제73조제3항전단중 “협회중개시장별”을 “코스닥시장별”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6조제1호 및 제2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선물거래소법”을 “「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8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

국환거래법”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4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기관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5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7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8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9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2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7조제2항제4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1조제2호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29조제2항제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2조제5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34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본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70조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72조제5호나목 및 라목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3조제1항제2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각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

항제9호 및 동조제4항제2호가목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나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각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제76조제1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79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82조제1항제2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6조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87조제1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99조제2항제1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13조제2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은행법시행령”을 각각 “「은행법시행령」”으로 하고, 제115조제1호 내지 제5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

행법”으로 하며, 제116조제2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17조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9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28조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29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130조제1항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31조의12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31조의13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금융지주회

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32조제2항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7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42조제1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143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46조제1항 전단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며, 제148조제1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9조제1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61조중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며, 제166조중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평가전문인력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인력의 요건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

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제154조제1항에 따른 판매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과 외국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따른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허용(영 제10조)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시에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는 유가증권 등의 편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시에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

(3) 간접투자자산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영 제55조제6호 단서 신설)

(1)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의 간접투자증권에의 접근과 선택이 제한되어 있음.

(2) 보험설계사 등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

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3)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 및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확대(영 제69조·제72조 및 제73조)

(1) 투자증권의 차입금지 등 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

(3)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함에 따라 차입매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 발행어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부동산 등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의 개선(영 제82조)

(1)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하여도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2)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 외에 영업권의 대가를 포함한 취득원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도 시장가치·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간접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완화(영 제131조의4 및 제131조의6)

(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의 규제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이 활발하지 못함.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있어서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영 제154조 및 제155조)

(1)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서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판매대행회사가 동일한 외국간접 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판매회사가 유사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2)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 하여, 국내대리인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신고·변경· 판매중지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투자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6년 4월 27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윤광웅

● **대통령령 제19456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다음 연도의”를 “연차별”로, “1월 31일”을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다음 연도의”를 “연차별”로,